

朝鮮時代 前期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上)

-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

이 은 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부교수

A Study on Pobeckchuck in the Former Period of Chosun Dynasty(First)

- Focusing on the True Record of Chosun Dynasty -

Eun-Kyung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Daejeon University.
(2003. 1. 25 투고)

ABSTRACT

The measurement in ruling period of King Sejong in Chosun Dynasty remained unchanged compared with that of Goyeo Dynasty.

But Hwangjongchuck, the basis of measurement was amended in the 7th year in ruling period of King Sejong, Juchuck, Youngchochuck, Cholegichuck in the 12th, and Pobeckchuck in the 13th.

The record of Pobeckchuck first appeared in the true record of Chosun Dynasty in the 4th year in ruling period of Sejong, and first record on the amendment of the Pobeckchuck was found in the 13th year in his ruling period. The presentation of the comparison of Pobeckchuck with Cholegichuck in volume 128 of true record of Sejong makes help the estimation of the length of Pobeckchuck. To calculate one Chuck of Pobeckchuck with this measurement comes to 44.75cm in present measurement, and the length at this time had remained unchanged to Yeonsangun period.

Important fact which was newly found in the true record of Chosun Dynasty was that Pobeckchuck had been used for diverse purposes. Pobeckchuck was used to measure width, length and thickness in manufacturing wardrobe, and also to measure cloth decorating wardrobe. This is the first record(4th year of reign of Sejong) showing that Pobeckchuck was first used to measure cloth in Chosun Dynasty. The record shows that Pobeckchuck was also used to measure the length of circumference of castle for its construction, to measure distances between people, the length of hook of wooden handle, and the height of man.

Key words : Pobeckchuck(포백척), Juchuck(주척), Hwangjongchuck(황종척),
Youngchochuck(영조척), Cholegichuck(조례기척)

I. 緒 論

1. 問題의 提起

服飾에 관한 많은 論文이 發表되고 있으나 遺物이 만들어질 當時에 使用되었던 尺度에 관해서는 分명한 基準을 밝히지 않은 채, “匹” “尺” “寸” 등 그 寸수를 報告하는 경우에 實際로 그 說明을 가늠하기 어려운 經驗을 종종 했었다. 分明, 尺度도 服飾의 한 부분으로서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尺度에 관한 研究는 服飾에 대한 研究 以前에 先行되어야 할 課題라고 생각된다.

衣服을 짓기 위해 各種 布帛을 測量할 때는 尺度가 基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文獻과 遺物을 통한 布帛尺의 研究는 우리의 衣服을 올바르게 理解하는 基本 要素다. 따라서 몇 백년 전, 指尺 혹은 尺貫法을 利用하여 지은 옷을 이해하고, 그가 지닌 計劃과 比例를 把握하자면 당시 使用하였을 用尺의 길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인은 1981년에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고, 1993년에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時代마다 달랐던 布帛尺의 1尺 길이와 尺의 變遷 過程을 밝혀 보았다. 이것은 長久한 우리 尺度의 歷史를 整理한다는 점에서 重要的 일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現在, 完譯 朝鮮王朝實錄을 보면서 未備했던 部分을 補完하고 誤謬가 있었던 部分을 修正해야겠다는 必要性을 느꼈다. 또한 朝鮮時代に 쓰여진 다른 文獻들과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을 拔萃하여 서로 比較·分析함으로써 歷史的 眞實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再 試圖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布帛尺에 관한 記錄과 內容을 基準으로 朝鮮時代를 前期, 中期, 後기로 나누어 研究해야겠다는 計劃을 세웠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처음 布帛尺이란 單語가 보이게 시작한 世宗 13年, 布帛尺을 校正한 이후 다시

校正했다는 記錄이 없었던 그리고 布帛尺을 城壁 築造時, 距離 測量時, 家具 製作時 등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과 混用하여 使用하였던 燕山君 代까지를 前期로 정하였다. 中宗 代에 들어서 다른 種類의 자들과 混用해서 使用하던 布帛尺을 옷감 專用의 자로 統一했다는 記錄이 보인다. 이후 布帛尺은 一般에서 使用되는 私尺과 混用되면서 尺度가 점차 無秩序해지는데 이를 世宗 代 記錄에 맞추어 정비한 正祖 代까지를 中期로 정하였다. 그리고 純祖 이후 옷감을 測量하는 자로서 布帛尺 이외에 針尺, 曲尺, 鯨尺 등 材質에 따라 用途에 따라 多様な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時期를 後기로 分類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發表하는 論文에서는 朝鮮時代 前期(太祖~燕山君)만을 다루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 및 內容

本 研究는 朝鮮時代 前期에 쓰여진 文獻과 同時代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우리 固有의 尺度를 史的으로 定立 하는데 目標을 두었다. 時代的으로는 朝鮮의 太祖부터 燕山君 代까지를 朝鮮時代 前期라 간주했고, 研究 對象은 각 時代마다 使用되었던 尺度의 種類가 多樣하였지만 그중 布帛尺을 中心으로 展開하고자 한다. 研究資料로는 朝鮮時代 前期에 쓰여진 文獻들, 그 중에서도 특히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分析하고자하며, 資料를 구하기 困難한 것은 다른 學者들의 研究를 再 引用하여 理論的 體系를 세우고자 한다.

布帛尺이란 單語는 概念上 差異가 있어 定義 내리기가 어렵지만 針尺, 鯨尺, 布尺, 裁尺, 綿紬尺, 苧布尺 등 모두를 包含하는 넓은 意味로서 解釋하였다. 社會가 分化될수록 각 分野에서 專用의 자(尺)를 만들어 법에 따라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黃鍾尺 등 여러 種類의 자(尺)가 同時에 使用되었는데 이들의 寸수가 糾紛되어야 만이 布帛尺의 길이를 알 수 있으므로 第3章에서는 朝鮮時代 使用되었던 여러 種類 尺을 說明하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朝鮮時代 前期 布帛尺의 變遷 過程을, 第5章에서는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世宗부터 燕山君 代까지의 布帛尺을 拔萃하여 本文에 明示하고 第4

章의 내용과 比較·分析함으로써 朝鮮時代 前期 國家에서 採擇하였던 布帛尺 1尺의 精確한 길이를 밝히고자 한다.

II. 布帛尺의 定義 및 單位

1. 布帛尺의 定義

各種 文獻에 나타난 布帛尺과 類似한 意味로 쓰여진 單語는 針尺, 綿紬尺, 苧布尺, 布尺, 鯨尺, 裁尺 等 여러 가지가 있다. 境遇에 따라서 布帛尺이란 이 모두를 包含하는 廣義의 뜻도 있고, 따로 區別되어서 쓰여지기도 한다.¹⁾

廣義로서의 布帛尺이란, “衣服을 裁斷하거나 各種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바느질자를 말하며”라 했고,²⁾ 尹張燮(1975)은 ‘韓國의 營造尺度’에서 “布帛尺은 裁縫用으로 使用되던 것으로 中國에서는 俗稱 裁尺이라고도 한다. 이 布帛尺은 民間에 通用되는 것이어서 法定尺이 아니므로 時代에 따라 또는 地方에 따라서 길이의 增減이 많았으므로 根據가 比較的 不確實하고 紊亂하여져서 長短의 差異가 많다.”라고³⁾ 하여, 尺度하는 옷감의 種類, 使用되어지는 場所와 用途에 關係없이 모두 布帛尺이라 일컫고 있다.

狹義로 쓰여진 境遇를 보면, “世宗 12年 王은 集賢殿에 分부하여 周尺을 考正케 하니, 古尺, 周尺, 布帛尺, 曲尺, 針尺, 平市正尺, 綿紬尺, 苧布尺, 營造尺, 黃種尺, 造禮器尺 等 여러 種類로 가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우리 日常生活의 基本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여⁴⁾ 當時에는 布帛尺, 綿紬尺, 針尺, 苧布尺 等으로 嚴密하게 區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같은 區分은 開化期때 와서 더욱 明白해 지는데 文獻에 보면 “布帛尺이란 布木에 使用되는 尺으로 曲尺 一尺六寸一分에 該當하며, 針尺은 裁縫에 使用되는 尺으로 鯨尺과 같고 曲尺 一尺六寸六分과 同一하며 이 尺은 家庭用으로 私尺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있어⁵⁾ 布帛尺은 商人들이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商業用 尺인 反面, 針尺은 家

庭에서 裁縫할 때 使用하는 私尺으로서 布帛尺과 針尺은 用途에 있어서 다름을 說明해 주고 있다.

본 研究에서는 針尺, 鯨尺, 布尺, 裁尺, 綿紬尺, 苧布尺 등 모두를 布帛尺 속에 包含시킨 넓은 의미로서 展開코자 한다.

2. 尺度의 起源

印度 北部 ‘모헨조다로’에서 發見된 石灰石에 눈금이 새겨져 있는 자(尺)는 紀元前 3000年 以前의 것으로 推定되고, 東洋의 計量 技術은 紀元前 4-3000年 頃 黃河 流域에 移住해 온 漢民族의 손에 의해 最初로 시작되어 東아시아 여러 나라의 尺貫法 單位係의 源流가 되었다고 하며⁶⁾, 우리의 度量衡 制度는 古代 中國에서 傳來되어 發展하였고, 日本의 制度는 三國時代때 우리 나라에서 傳播되었다고 한다.⁷⁾

그러나 柳子厚는 「朝鮮 貨幣考」에서 다음과 같이 論했다.

“자(尺)는 우리 東方 文獻에서 그 起源을 찾아보면, 大東歷史 朝鮮 文武王 元年(周穆王 二年, 紀元前 一千年)에 定律 度量衡이라는 記錄이 아마 最古 記錄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創始함이라 記錄되어 있지 않으니 이때에는 度量衡을 在來의 東方式과 中國式을 較取更制한 것이 分明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斷定을 내릴 수는 없으나 尺의 起原을 檀君聖帝 時代로 부터 잡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한다.----- (中略)----- 그 理由는 檀君이 大偉首聖으로서 衣服을 制敎하시면서 尺度方法을 不敎하셨을리가 萬無하고, 그 當時 中國尺이 轉入되었을 것도 不言可知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檀君朝에서부터 用尺한 事實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또한 우리 東方에서는 布帛麻, 布綿 等を 幣로 使用한 것이 因緣이 되어 稅納에 있어서 布帛 等を 尺度하여 現代의 稅金과 같이 徵收한데서 布帛尺 또는 針尺이 發端되었다고 했다.⁸⁾

稅納의 例는 朝鮮時代에서 찾을 수 있으니 軍人들에게 支給하는 모든 奉足을 무명으로 支出하는데 하루에 한자(一尺)씩 計算하여 軍校로써 一年간 服務한 자에게는 9匹(삼베나 무명은 一匹이 40자

씩이다)을支給하고 一年에 달하지 못한 者는 그 服務한 實際 日數에 따라 무명의 匹數를 計算하였다 한다.⁹⁾

3. 尺度の單位

人類 初期의 度量衡은 그 基準이 처음에는 人體의 各 部分이었고 이어서 穀物粒에서 求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定說이다. 그 實例를 들면 尺은 손으로 寸數를 재는 象形文字이고 FEET(FOOT)는 발 길이, GRAIN은 穀物粒의 重量 等이다.¹⁰⁾ 그러나 社會生活의 發達로 集團 規模와 交易 範圍가 擴大됨에 따라서 보다 正確하고 客觀性이 있는 尺度의 單位가 必要하였다. 이것은 항상 손쉽게 利用될 수 있어서 安定되고 變化가 적으며 表現이 直接的이어야 하였으므로 人體 및 自然物에서 그 基準을 求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두 가지 說에 對하여 그 根源을 檢討해보면 다음과 같다.

1) 人體基準說(身度尺)

上古時代 사람들은 人體의 指長, 手長, 肘長, 足長 및 身長 等を 尺度의 單位로 삼아서 直接的인 尺度의 比較 體系를 만들어 使用하였던 事實은 世界各國에 共通的으로 찾아볼 수 있는 現狀이다.¹¹⁾

東洋에서 처음 使用한 尺度의 單位는 人體의 一部가 基準이 되었던 것으로 이에 對한 最古의 記錄으로는 中國 「史記」의 「夏本記」中 「聲爲律 身爲度 稱以出」이란 것이 있다.¹²⁾ 또 「孔子家語」에는 「夫布指知寸 布手知尺 舒肘知尋 斯不遠之則也 周制三百步爲里 十步爲井」이라 하였다.¹³⁾

우리 나라도 옷을 만들기 위해서 치수를 잴 때 손가락, 팔, 어깨 等 몸의 一部分으로 어립잡는 境遇가 많았으므로 저고리 깃고대는 엄지와 中指를 벌린 길이였고, 1寸은 中指의 一節길이, 1尺은 겨드랑이에서부터 中指 끝까지의 길이였다.¹⁴⁾

‘指尺’이란 말은 深衣의 制度를 사람의 생김새에 따라 길게도 짧게도 넓게도 좁게도 하는 치수로 마련한 까닭에 생긴 말이며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를 1寸으로 잡고 만든 자(尺)의 이름이다.¹⁵⁾

2) 自然物 基準說

自然物 基準說이란 秬黍, 蠶絲, 馬尾같은 自然物에서 尺度의 基準이 생겼다는 說로서 「漢書律歷志」¹⁶⁾에서는 秬黍 中間值 굵기를 擇해 그 넓이를 基準하여 1分으로 하고 90分 = 9寸을 黃鍾律管의 길이로 定하면 이것이 中國 古代부터 傳來된 標準이 된다는 것이다.¹⁷⁾

「韓詩外傳」에 「禹十寸爲尺 湯十二寸爲尺 武王八寸爲尺」이란 尺의 制度에 關한 記錄이 있다.¹⁸⁾ 이 記錄은 「漢書律歷志」에서 黃鍾之長인 9寸 길이가 尺度의 起原이란 說과 類似한 內容인데 今일까지 發見된 古 尺度에서나, 「禮記」에 記錄된 길이 表記에서 尺이란 10寸 單位였음을 알 수 있다.¹⁹⁾

III. 朝鮮時代 尺度의 種類

朝鮮時代에서는 여러 가지의 尺度, 즉 布帛尺, 周尺, 黃鍾尺, 營造尺, 造禮器尺 등이 同時에 使用되었는데, 布帛尺의 길이를 찾아내려면 諸 尺度사이의 關係를 알아야 하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周尺

周尺이란 中國 周代의 尺으로 옛부터 重要한 機具에는 特히, 土地의 丈量과 里程 等 距離를 測定할 때 使用되었다. 「增補文獻備考」에는 “國初엔 家禮의 司馬公 石核周尺을 本으로 하였으나 이것이 年久하여 誤差가 甚하므로 洪武 癸酉 年間에 許調가 얻은 周尺과 다른 周尺을 入手하여 正確한 周尺을 만들어 나라에 바쳤다” 했으며,²⁰⁾ 世宗 12年 9月에는 王命에 依하여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했다는 記錄이 있다.²¹⁾

世宗 12년에 考正된 周尺을 五禮 布帛尺에 準하면 4寸6分5釐, 田制詳定所 遵寸冊의 布帛尺에 準하면 4寸4分5釐, 黃鍾尺에 準하면 5寸9分9釐에 該當하여 그 길이는 20.81cm였다고 考證되고 있다.²²⁾

「經國大典」에는 周尺이 黃鍾尺의 6寸6釐, 즉 21.04cm로 약간 길어졌으며, 肅宗때의 길이는

20.94cm였고, 正祖 20년에 完成된 華城城役의 記錄 「華城城儀軌」에는 19,63cm로 되어 있다.²³⁾

2. 黃鍾尺

黃鍾이란 古代 音律의 基本樂器를 말하며 黃鍾管의 長이를 尺度의 基準으로 한 것을 黃鍾尺이라 한다. 黃鍾累黍之法에 依하여 九十分을 黃鍾之長 즉, 黃鍾律管長으로 하고, 百分 즉, 十寸을 黃鍾尺一尺으로 하는 것으로 時代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었는데, 朝鮮時代 世宗 12年 許調와 朴堧이 中心이 되어 尺度考正을 實施하였을 때의 黃鍾尺 長이는 34.72cm였다고 考證되었다.²⁴⁾ 이 長이는 朝鮮時代 尺度의 基本이 되었는데, 世宗때의 五禮 布帛尺에 準하면 7寸4分3釐이다.

英祖 26年 尺度 改正 時의 長이는 31.25cm로 世宗때에 비해 짧아졌으나, 純祖 20年 釐正周尺 時의 長이는 34.74cm였다. 昌德宮 所藏의 鑰尺 一面에 表示되어 있는 黃鍾尺 5寸 長이는 17,33cm로써 1尺 長이는 34.66cm가 된다.²⁵⁾

3. 營造尺

營造尺은 樂器의 製造와 建築, 造船, 造車 木工, 刻工, 石工 等, 主로 官家에서 쓰던 자(尺)로 通稱 木尺, 工尺, 營造尺, 魯班尺 等으로 불린다.²⁶⁾

世宗 12年(1430年)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할 때 黃鍾尺의 9寸인 黃鍾律管長은 營造尺의 單位로 使用되었다.²⁷⁾ 이때의 長이는 31.24cm로써 五禮 布帛尺에 準하면 6寸9分7釐, 基準 尺度인 黃鍾尺에 準하면 8寸9分9釐가 된다.²⁸⁾

正祖 20年(1796年)에 完成된 華城(水原城)의 實測檢尺에서 얻어진 營造尺은 31.0cm였고, 昌德宮에 所藏되어있는 黃鍾尺 1尺 長이에 準해 營造尺 長이를 計算하면 31.17cm가 된다. 光武 6年(1902年)부터는 1m의 10/33인 30.3cm의 單位 長이를 가진 曲尺을 營造尺으로 使用케 되었다.²⁹⁾

4. 造禮器尺

造禮器尺은 文廟 및 宗廟 祭禮의 制度 基準尺이었는데 印用尺으로도 알려져 있다. 禮器는 祭器를 말하며, 各種 禮器를 製作할 때 使用하던 자(尺)를 禮器尺 또는 造禮器尺이라 한다.³⁰⁾

『世宗實錄』 五禮 幣帛 欄에 보면 幣帛 制度에 使用하는 자(尺)는 造禮器尺인데 長이는 이번에 校正된 布帛尺의 6寸4分에 該當한다는 記錄과 함께 첫머리에 新制 造禮器尺의 實寸圖를 그려 두었는데 正確한 자(尺)로 實測해 본 長이는 28.64cm였다.³¹⁾

其後 經國大典의 造禮器尺은 28.57cm이며, 英祖 26年 改正 尺度 時 長이는 28.41cm이고, 純祖때 長이는 28.64cm였다. 昌德宮 所藏의 鑰尺 第四面에는 禮器尺이라는 記銘과 5寸 實長 13.73cm의 실눈금이 精密하게 陰刻되어 있어 1尺의 長이가 27.46cm임을 알 수 있다.

IV. 朝鮮時代의 布帛尺

太祖에서 太宗까지는 創業 時代로 前代의 影響을 받았으며, 世宗때 諸 制度의 改革과 整頓이 이루어져 國家의 基礎가 強固해졌고, 度量衡 制度도 考正되고 整備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當時 記錄을 보면, 좋은 政治를 爲해서는 度量衡이 同一하여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우리 나라 衣冠과 禮樂은 모두 中國을 模倣하여 天下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 莫大한 일을 우선 옛날대로 無據한 자(尺)를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律과 度量衡을 議論할 일이 있을 때에 어찌 가히 輕率하게 議論하겠는가”라 했고, “法도가 한결 같아야 民心 또한 하나가 되어 詐僞가 없어지는 것이다. 法도를 한결같이 하는 길은 律과 度量衡을 同一하게 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하였다.³²⁾

世宗이 紊亂했던 度量衡 制度를 統一했을 때, 尺度의 標準은 當時에 널리 使用되었던 尺度 중 가장 正確한 것을 取하기 위하여 中國의 標準尺度와 昏

樂의 標準尺인 黃鍾尺을 正確히 再現시켰다 한다. 「增補文獻備考」에 “世宗 7年(1425年)에 朴堧이 海州産秬黍를 使用하여 黃鍾累黍之法에 따라서 黃鍾之長을 考正하여 黃鍾律管을 만들고 이 音律管이 내는 소리로 國樂의 基本音을 定하였다.”고 있다.³³⁾ 黃鍾律管長을 9寸으로 하는 黃鍾尺(10寸길이)은 尺度의 基本이 되었는데 이를 基準으로 하여 朝鮮 初期 布帛尺의 길이를 알 수 있다.

또한 世宗 12年 9月(1430年), 集賢殿에서 周尺을 考正했다고 하며,³⁴⁾ 이때 營造尺과 造禮器尺 等도 같이 考正했는데,³⁵⁾ 그 內容에, 黃鍾尺 基準으로 周尺은 6寸6釐, 營造尺은 8寸9分9釐, 造禮器尺은 8寸2分3釐라고 되어 있으나 布帛尺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듬해인 世宗 13年 4月 초 7日 “各 고을의 저울, 말(斗), 되(升)는 各各 그 長官이 바르게 校正하여 나누어주었으나 布帛尺의 制度는 일찍이 바르게 校正하지 않았기 때문에 京外의 尺度가 한결같지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淸컨대, 各 고을로 하여금 竹尺을 만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京市署로 하여금 그 市의 標準尺度에 準하여 바로 잡아 還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는 記錄이 있어, 前부터 使用해오던 國內 여러 길이의 布帛尺을 이때 처음으로 校正한 事實을 알 수 있다.³⁶⁾

또한 同書 五禮 幣帛 欄에 “무릇 幣帛制度는 모두 길이가 1丈8尺이며 모두 苧布를 使用한다. 이때 자(尺)는 造禮器尺을 使用하는데 이 자(尺)는 지금 官府의 布帛尺에 準하면 6寸4分이 되어 布帛尺 1尺에서 3寸6分을 減한다. 고로 1丈8尺은 布帛尺 11尺5寸2分에 該當된다.”고 있는 즉, 造禮器尺은 官府의 布帛尺으로 6寸4分이 된다.³⁷⁾



1/2 縮圖

<圖 1> 新制 造禮器尺 (世宗實錄 卷128 五禮 吉禮 字例)

圖 1은 五禮 첫머리에 그려진 新制 造禮器尺의 實寸圖인데 正確한 자(尺)로 재어 본 길이는 28.64cm이다. 이것으로 布帛尺의 길이를 計算하면

(28.64cm × 1/0.64 = 44.75cm) 世宗 代 布帛尺의 길이는 44.75cm가 된다.

이것은 世宗 12年 許調가 校正한 新制 造禮器尺의 唯一한 原本인데 紙面 上에 그려진 것이다. 朴興秀(1967)는 ‘李朝 尺度에 관한 研究’에서 太宗이 許調에게 洪武(明의 太祖) 舊制와 東國儀禮에 依해 우리 나라의 五禮儀를 定하게 했을 때, 許調가 만든 것이라 하였다.³⁸⁾ 「增補文獻備考」에는 國初엔 「家禮」에 있는 司馬公의 石刻周尺을 本으로 했으나 그것이 年久하여 誤差가 甚하므로 洪武 癸酉年에 許調가 얻은 周尺과 다른 周尺을 入手하여 周尺 校正을 했다는 記錄이 있다.³⁹⁾ 또 校正된 周尺과 黃鍾尺, 營造尺, 造禮器尺 等の 길이와 關係値는 있으나 布帛尺 만은 빠져 있는 점을 綜合하면, 이 諸尺度 사이의 길이와 比較値는 許調가 五禮의 詳定上 必要해서 校正한 尺度의 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世宗 13年(1431年)의 田制詳定所에서 黃鍾尺,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布帛尺 等の 度器를 만들었을 때⁴⁰⁾ 田制詳定所 遵寸冊⁴¹⁾에 記錄된 布帛尺의 길이는 46.73cm로써 五禮儀의 布帛尺 길이보다 1.98cm가 더 길다.

前記한바와 같이 校正된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은 中國의 標準尺에 比較하여 正確하게 校正되었을 것으로 보며, 布帛尺은 國內의 本에 依하여 校正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布帛尺은 世宗때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使用되고 있던 것을 校正 統一한 것이라 생각된다. 要約하면, 世宗 7년에 度量衡의 原器인 黃鍾尺이, 12년에는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이, 13년에는 布帛尺이 校正 新制되었다.

朴興秀(1967)는 世宗 代의 遺物을 實測分析하여 當時 度量衡의 原器였던 黃鍾尺의 正確한 길이는 34.72cm라 했는데, 이를 基準으로 布帛尺의 길이를 推算하면 表 1과 같다.

즉, 黃鍾尺 1尺 길이인 34.72cm를 基準으로 五禮 布帛尺을 換算하면, 44.75cm가(34.72cm × 1.289/1 = 44.75cm) 되는데, 이는 五禮 幣帛 欄에 그려진 新制 造禮器尺의 길이 28.6cm를 가지고 布帛尺을 換算한 것(28.6cm × 1/0.64 = 44.75cm)과 同一함을 알 수 있다.

<表 1>黃鐘尺 基準에 의한 世宗 代의 諸 標準尺의 길이

尺의 종류	一尺의 길이	
	基準(黃鐘尺 1)	單位(cm)
黃鐘尺	1.0000	34.72
周尺	0.5993	20.81
營造尺	0.8997	31.24
造禮器尺	0.8250	28.64
布帛尺(五禮)	1.2890	44.75
布帛尺(田制詳定所)	1.3460	46.73



<圖 2> 世宗13年의 布帛尺(世宗大王 紀念館 所藏)

圖 2는 世宗 13年 4月에 考正된 구리로 만든 布帛尺으로 '世宗大王 紀念館'에서 1973年에 原形대로 複製한 것인데, 長 46.73cm, 幅 3.6cm, 厚 0.4cm로 斷面은 半圓形으로 되어 있다.

世宗 28年에는 新制 校正된 諸 尺度를 保存키 위해 律度에 맞춰서 銅으로 鑄造한 各 尺의 標本을 널리 各 官府와 各 山에 分藏 保管케 하였다.⁴²⁾ 銅을 使用한 理由는 銅은 物件을 地극히 精密한 것으로서 마르고, 젖고, 차고, 답고 한 때문에 그 節度를 變하지 아니하고 바람, 비, 햇볕, 이슬 때문에 그 모양을 고치지 아니하고 擘擘하기가 擘擘함이 있어 四君子의 行實과 비슷함이 있는 까닭이라 했으니,⁴³⁾ 우리 祖上들의 賢明한 一面을 엿볼 수 있다.

睿宗 元年(1469年)에 完成된 「經國大典」工典에 度之制는 十釐爲分, 十分爲寸, 十寸爲尺, 十尺爲丈이며, 周尺을 黃鐘尺에 準하면 6寸6釐, 營造尺을 黃鐘尺에 準하면 8寸9分9釐, 造禮器尺을 黃鐘尺에 準하면 8寸2分3釐, 布帛尺을 黃鐘尺에 準하면 1尺3

寸4分8釐라고 되어 있다.⁴⁴⁾ 「經國大典」記錄과 世宗 때의 尺度를 比較해 보면 表 2에서와 같이 黃鐘尺, 造禮器尺, 營造尺, 周尺 등은 一致하고 있으나 五禮 布帛尺과는 約 6分 程度의 큰 差異를 보이고,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布帛尺과는 2釐의 差異로 거의 一致하고 있다. 따라서 成宗 때 布帛尺의 길이는 1尺3寸4分8釐 卽, 46.80cm로 이는 世宗 때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布帛尺 길이 1尺3寸4分6釐와 差異가 없는 점, 그리고 世宗과 成宗 間에 布帛尺의 改正에 對한 記錄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世宗 때의 布帛尺이 계속 使用되었다고 본다.⁴⁵⁾

V.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

朝鮮王朝實錄을 살펴보면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맨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世宗 4年이다. 물론 朝鮮時代 初期 다른 文獻에서도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찾을 수가 없다.

朝鮮을 太祖가 創業한 이래 世宗 代까지 度量衡史는 高麗 時代에 비해 별다른 變化없이 進行 되었음을 다음으로 알 수 있다.

“朝鮮의 太祖도 역시 高麗 末의 量田法과 租稅

<表 2> 經國大典 記錄과의 對照表

尺	黃鐘尺 基準(34.72cm)				差異	
	世宗代 單位(尺)	換算值 單位(cm)	經國大典 單位(尺)	換算值 單位(cm)	單位(尺)	單位(cm)
周尺	0.5993	20.81	0.6060	21.04	- 0.0067	- 0.23
營造尺	0.8997	31.24	0.8990	31.21	+ 0.0007	+ 0.03
造禮器尺	0.8250	28.64	0.8230	28.57	+ 0.0020	+ 0.07
布帛尺(五禮)	1.2890	44.75	1.3480	46.80	- 0.0590	- 2.05
布帛尺(田制)	1.3460	46.73			- 0.0020	- 0.07

法 및 度量衡 制度를 그대로 繼承하였는데 高麗에서 變化가 없었다면 世宗때 尺度는 바로 新羅때 그것이었음이 明白하다.”고 있고,⁴⁶⁾ “新羅 時代 後期の 尺은 대개 朝鮮時代와 同하니라”라고 하였다.⁴⁷⁾ 다시 말해서 太祖에서 太宗까지는 創業 時代로 前代의 影響을 받았으며, 世宗때 諸 制度의 改革과 整頓이 이루어져 國家의 基礎가 強固해졌고, 度量衡 制度도 考正되고 整備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1. 世宗實錄⁴⁸⁾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世宗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世宗 4年에 1건, 13年에 1件, 16年에 1件 그리고 世宗實錄 卷128, 권133 五禮에 2件이다.

1) 世宗 4年

世宗 4年 9月 6日 儀仗制度 原典에 보면 ‘喪俞로는 白紵布帳이 셋 內官이 들어갈 곳이다, 白正布帳이 넷이며 官員들이 들어갈 곳이다, 玉冊으로는 謚冊이 48箇, 哀冊이 84간인데, 모두 써서 새긴 것인데, 簡의 길이가 6寸이며 너비가 7分이요, 두께가 4分이다 <尺은 布帛尺을 使用한다>.

위의 記錄으로 미루어 朝鮮時代 初期의 布帛尺은 衣服을 裁斷하거나 各種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尺으로만 使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世宗 4年 儀仗인 白紵布帳과 白正布帳 製作 時 길이, 너비, 두께를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고, 그 儀仗을 治裝하는 붉은 眞絲, 비단, 紅草襪을 재는데도 역시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王朝實錄에서 布帛尺이 옷감을 재는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最初의 記錄이다.

2) 世宗 13年

世宗 13年 4月 7日 工曹에서 布帛尺의 尺度를 統一할 것을 건의한 記錄이 있다.

工曹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이 저울·斗·升은 각각 그 長官이 바르게 校正하여 나누어주었으나, 布帛尺의 制度는 일찍이 바르게 校正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京外의 尺度가 한결같지 못하여 서로 길고 짧으니, 청컨대 각 고을로 하여금 竹尺을 만

들어 올려 보내게 하여, 京市署로 하여금 그 市의 標準 尺度에 準하여 바로잡아 還送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되어 있다. 記錄으로 미루어 이전까지 使用해 오던 國內 여러 길이의 布帛尺들이 世宗 13年 처음으로 校正된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길이를 算出 해낼 수 있는 詳細한 記錄이 없어 當時 布帛尺의 正確한 길이는 알 수가 없다.

이 記錄에서 일찍이 라는 것은 世宗 12年을 뜻한다. “世宗 12年 王은 集賢殿에 分부하여 周尺을 考正케 하니, 古尺, 周尺, 布帛尺, 曲尺, 針尺, 平市正尺, 綿紬尺, 苧布尺, 營造尺, 黃鍾尺, 造禮器尺 등 여러 種類로 가리게 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우리 日常生活의 基本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여 當時 布帛尺, 綿紬尺, 針尺, 苧布尺 등으로 嚴密하게 區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⁹⁾ 그 內容에, 黃鍾尺 基準으로 周尺은 6寸6釐, 營造尺은 8寸9分9釐, 造禮器尺은 8寸2分3釐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布帛尺에 관한 것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當時 다른 種類의 尺들은 校正하면서 布帛尺은 除外되었다가 이듬해인 世宗 13年 校正했음을 알 수 있다. 布帛尺만 따로 世宗 13年에 考正한 理由를 資料가 없어 밝히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3) 世宗 16年

世宗 16年 2月 14日 함길도 觀察使 金宗瑞가 아뢰기를, “신이 慶元·영북진 두 곳의 城基를 審察해 정하고, 그 布置의 條件을 開錄하여 보고하나이다. 알목하는 경작 농지가 적을 뿐 아니라, 척박한 田地가 거의 반이나 되며, 간혹 기름지고 살찐 땅이 있긴 해도, 다 저들의 所有라서, 入住할 人民들이 耕作할 田地가 적어 郡邑을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東良北과의 상거가 멀지 않고, 북쪽으로 賊路와 서로 통하는 要衝地이며, 또 韓叢里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壁城을 布帛尺으로 주위 3千尺이 되게 築造합니다.”

이 記錄에서 특기할 만한 事實은 城壁을 쌓을 때, 그 주위 길이 測量 時 布帛尺을 使用했다는 점이다. 一般적으로 지금까지는 城壁 주위 測量 時 周尺을 使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朝鮮前期의 布帛尺이 各種 布帛을 測量하는 자로 使用

된 것 외에 거리나 里程의 測量에도 使用되었음은 注目할 만한 점이다.

4) 世宗實錄 卷128, 卷133, 五禮

世宗實錄 卷128 4張 五禮 幣帛 條에 보면 “무릇 幣帛의 制度는 모두 길이가 1丈 8척 尺인데, <尺은 造禮器尺을 使用한다. 지금 官府의 布帛尺에 比較하면 6寸 4分에 準하고 3촌 6푼을 감하는데, 1장 8척은 지금의 布帛尺 11尺 5寸 2分에 該當된다. 尺圖는 後面에 있다> 모두 苧布를 使用한다.”라고 記錄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있는 布帛尺에 관한 記錄 중 처음으로 造禮器尺과의 比較가 나와 있어 布帛尺 길이를 가늠 할 수 있게 되었다<표 1 참조>. 布帛尺에 基準하여 造禮器尺이 0.64 尺이 된다는 記錄은 당시의 다른 文獻들의 記錄과도 一致한다. 造禮器尺의 尺圖는 後面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實測圖의 길이를 재 보면 28.6cm로 이를 가지고 布帛尺의 길이를 計算하면 當時 布帛尺 1尺의 길이는 現在の 單位로 44.75cm가 된다.⁵⁰⁾

世宗實錄 卷133 五禮 家禮 儀式 文科 殿試儀에는 期日 前 2日에 禮祖에서 內外官에게 宣攝하여, 각각 그 職責을 다하게 한다. 擧人의 자리를 殿庭의 東쪽과 西쪽에 設置하되, 北向으로 하고 東쪽을 上으로 하며, 사람마다 서로 6尺씩 떨어지게 한다. <尺은 布帛尺을 使用한다>고 記錄되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도 布帛尺을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2. 文宗實錄⁵¹⁾

文宗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文宗 卽位 年에 1件, 1년에 2件이다.

1) 文宗 卽位 年

文宗 卽位 年 1月 4日 禮朝에서 文科 殿試儀를 아뢰었다. “期日 前 1日에 掖庭署에서 御座를 勤政殿 北壁에 南向하여 設置한다. 擧人의 자리를 殿庭의 東쪽과 西쪽에 設置하되, 北向하고 東쪽을 上으로 하며, 사람마다 서로 6尺이 되게 한다.

<布帛尺을 使用한다>.

이것은 世宗實錄 卷133 五禮의 記錄과 內容이 一致한다. 世宗 朝에서 實施되었던 文科 殿試儀가 文宗 卽位 年에 새롭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으로 推測한다.

2) 文宗 1年

文宗 1年 5月 5日에 黃海道 도체찰사 정분이 “陽德 지경의 谷山 防垣 이하 遂安·瑞興·鳳山·黃州 등 각 고을의 먼저부터 關防이 있던 곳은 모두 巡察하여, 그 官房의 옛터 및 官房을 새로 設置하여야 할 곳을 布帛尺으로 測量하고, 그 중에서 通行하는 要路로서 石堡를 두어 守禦하여야 할 곳을 모두 審定하였습니다.”이 記錄을 보면 옛터 및 官房을 새로 設置 할 곳을 布帛尺으로 測量하고 있다. 그 뒤에 나오는 記錄엔 새터와 옛터를 周尺으로 고쳐 計算한 것이 나오므로써 거리나 里程을 測量하는데 布帛尺과 周尺이 併用되어 使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世宗 16年의 기록에도 나오는 內容과 同一한 것으로 그 동안 變化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文宗 1年 6月 19日 新陳法을 完成하였는데 新陳法의 章標에는 “5委의 무리는 다 가슴과 배 사이에 길이 6寸 너비 4寸의 章標를 붙이는데 布帛尺의 치수를 쓴다. 各各 제 위의 色을 좃는다. 旗·麾 위에는 다 그 命號를 쓰고 아울러 認獸를 그린다.”고 있어 옷감으로 된 章標, 旗, 麾를 만드는데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世祖實錄⁵²⁾

世祖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世祖 11年에 1件이다.

世祖 11年 11月 3日 都體察使 韓明澹가 아뢰기를 “지금 命을 받고 京畿의 江華·喬桐 성터를 살펴 정하였는데, 江華 城攄는 布帛尺으로 9千 4百 16尺이고, 喬桐 성터는 7千 4百 90尺입니다. 두 고을에 백성이 적어 쌓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京畿의 號牌 軍籍과 徙民을 傳送하는 일이 끝나기를 기다린 후에 쌓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祖

때도 世宗 때와 마찬가지로 布帛尺이 성터를 測量하는데 使用되었음을 보여주는 記錄이다.

4. 成宗實錄⁵³⁾

朝鮮時代 前期 朝鮮王朝實錄에서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世宗과 成宗 代이다. 成宗 代의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5件이나 되는데 成宗 8年, 12年, 16年, 17年, 20年이다.

1) 成宗 8年

成宗 8年 2月 25日 禮朝에서 親蠶할 때 마땅히 행하여야 할 節目을 아뢰기를, “쇠로 된 갈고리의 制作은 지금 상고할 수 없으니, 요사이 使用하는 갈고리의 모양으로 만들되, 왕비께서 使用하는 갈고리는 宔쇠를 쓰고, 內命婦와 外命婦의 것은 正鐵을 써서 蠶납을 올리고, 木柄는 길이를 1尺 2寸으로 하되, 布帛尺을 使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王妃의 親蠶시 使用하는 갈고리의 木柄 길이를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했다는 記錄이 보인다. 지금까지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의 用途는 거리, 儀仗의 치수, 옷감을 재는데 使用되었던 것이 주었는데 木柄의 길이를 잴다는 記錄은 처음이다.

2) 成宗 12年

成宗 12年 1月 5日 증경 정승과 議政府 등이 심수도에 陣營을 설치하는 편부를 의논하였는데, “堤堰의 耕作을 금하는 限界는 일제히 會計를 따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옛터에 물이 가득 찬 것을 基準해서 布帛尺으로 고쳐 測量하여 會計에 記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耕作한 지 오래 된 田地가 다시 陳田에 編入되는 역을 함은 없을 것이며, 또한 제 마음대로 몰래 耕作하는 弊端도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記錄 역시 世宗 代와 마찬가지로 布帛尺이 옛터를 測量하는데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部分이다.

3) 成宗 16年, 17年, 20年

成宗 16年 3月 25日 四道 巡察使 洪應이 여러 道

內 여러 浦의 堡에 대해 書啓하기를, “諸道の 諸浦의 堡를 설치한 곳 가운데에서 전라도 長興 會寧浦의 堡를 設置한 곳은 坐地가 南向인데, 布帛尺으로 재면 둘레가 1千 9百 90尺이고, 南北의 길이가 3百 70尺이며, 浦 안의 샘이 다섯이며, 이 浦로부터 北으로 長興府까지는 陸路로 77里이고, 東으로 녹도 鹿島까지는 水路로 2息입니다.

成宗 17年 11月 19日 黃海道 箭灘 川防 巡察使 鄭蘭宗이 와서 復命하고 書啓하기를, “독을 쌓은 길이가 布帛尺으로 3百 56尺, 너비가 57尺, 높이가 6尺 7寸이며, 水門 둘을 두었는데, -----栗串 所 濃浦 방죽은 길이가 80尺, 너비가 40尺, 높이가 5尺입니다.”하고, 인해 모양을 그려서 올렸다.

成宗 20年 2月 4日 築城都 體察使가 하삼도의 축성 基準을 일정하게 할 것을 아뢰기를, “下三道 여러 浦의 쌓은 城이 高低가 정한 制度가 없으므로 大體에 적당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여러 포와 여러 고을의 城은 布帛尺을 써서 15尺을 標準으로 삼고, -----10尺 이하는 律에 의하여 죄를科하는 것이 어떠겠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成宗 16年, 17年, 20年 3件의 記錄 모두 布帛尺이 길이를 測量하는데 使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燕山君實錄⁵⁴⁾

燕山君 代에는 布帛尺에 관한 記錄이 1件이 있다. 燕山君 11年 12月 9日 各道の 運甁 신장은 布帛尺으로 3尺 5分 이상만 簡擇하여 올리게 하라는 것인데 傳敎하기를, “各道の 運甁 身長은 布帛尺으로, 이마서 발끝까지 3尺 5分 이상인 자 만을 簡擇하여 올리게 하라.”하였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처음으로 布帛尺이 사람의 身長을 재는 데에도 使用되었음을 보여주는 記錄이다. 世宗 代 五禮 布帛尺 1尺의 길이는 現在의 單位로 換算하면 44.75cm이다. 世宗과 燕山君 간에 布帛尺의 改正에 대한 記錄이 보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世宗 代 校正된 布帛尺이 계속 使用되어졌다고 본다. 3尺 5分 이상인 者라 하면 키가 156.6cm(44.75cm×3.5尺)이상인 사람을 簡擇한다는 뜻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은 王朝 別로 記錄되어 年代 別로 흐름을 把握하여 하나의 體系를 세울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물론 朝鮮時代 前期에 쓰여진 다른 文獻들 즉, 增補文獻備考, 田制詳定所 遵守冊, 經國大典 등에서도 布帛尺에 관한 記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文獻들에서는 布帛尺에 관한 것이 간헐적으로 記錄되어, 朝鮮王朝實錄과 比較·分析하여 正確한 理論을 찾아내는데 받침이 되어 줄 수는 있지만 體系的인 흐름 세우기 어려웠다. 더구나 田制詳定所 遵守冊에 記錄된 布帛尺의 1尺의 길이는 世宗實錄 卷128 五禮의 布帛尺 길이보다 1.98cm가 더 길다. 어떤 것을 世宗 代의 布帛尺의 길이로 認定하는가가 問題지만 類推해 볼 만한 資料도 없는 實情이다. 단지 睿宗 元년에 完成된 經國大典에 記錄되어 있는 布帛尺 1尺의 길이는 世宗實錄 五禮의 布帛尺 길이와 約 6分 程度의 큰 차이를 보이고,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布帛尺 길이와는 2釐차이로 거의 一致한다는 事實을 確認 할 수 있을 뿐이다. 朝鮮王朝實錄 睿宗 朝에서는 布帛尺에 관한 記錄은 보이지 않는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새롭게 發見된 注目할 만한 事實은 朝鮮時代 前期, 布帛尺이 衣服을 裁斷하거나 各種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尺으로만 使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儀仗인 白亭布帳과 白正布帳 製作 時 길이, 너비, 두께를 재는데, 그리고 그 儀狀을 治裝하는 붉은 眞絲, 비단, 紅草襪을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世宗 4年). 이것은 朝鮮王朝實錄에서 布帛尺이 옷감을 재는데 使用되었음을 보여주는 最初의 紀錄이다. 또 城壁을 쌓을 때 그 주위의 길이 測量 時 布帛尺을 使用하였는데, 周尺이 있음에도 布帛尺으로 거리나 里程의 測量을 했다는 事實은 疑問이 가는 部分이다(世宗 16年, 文宗 卽位 年, 1年, 世祖 11年, 成宗 12, 16, 17, 20年). 王妃의 親蠶시 使用하는 갈고리의 木柄 길이를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했다는 紀錄 역시 營造尺 대신 왜 布帛尺을 使用했는지 疑問이 남는다(成宗 8年). 옷감으로 된 章標, 旗, 麾를 만드는데도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文宗 1年). 燕山君 代에는

“各道の 勻平 身長은 布帛尺으로, 이마서 발끝까지 3尺 5分 以上인 자 만을 簡擇하여 올리게 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布帛尺으로 사람의 身長을 재었음을 말해 주는데 最初의 記錄이다.

물론 布帛尺이 多様な 用途로 使用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記錄이 그 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六百年史 第2卷에 보면, “世宗 26年 以後로는 布帛尺이 1等田尺의 길이를 表示하는 基準尺으로, 또는 漢江 水位를 測定하는 水位計에도 使用되었는데, 1尺 以下の 單位는 다른 尺度와 같았으나 1尺 以上에서는 달리하고 있었다”라는 記錄이 있다.⁵⁵⁾ 그러나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의 用途는 이보다 훨씬 多樣했다는 事實을 알 수 있었다.

朝鮮王朝實錄에서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紀錄에서 처음으로 布帛尺을 校正한 것은 世宗 13年이고, 처음으로 造禮器尺과의 比較가 提示되어 있어 布帛尺 길이를 가늠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世宗 朝 卷 128 五禮에서다. 布帛尺에 基準하여 造禮器尺이 0.64尺이 된다는 記錄은 당시의 다른 文獻들의 記錄과도 一致한다. 이를 가지고 世宗 代 布帛尺 1尺 길이를 計算해보면, 現在의 單位로 44.75cm가 된다. 이 때 校正된 이 길이는 燕山君 代까지 變化가 없었다.

VI. 要約 및 結論

朝鮮의 世宗 代까지 尺度는 高麗 時代와 比較하여 變化없이 進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世宗때에는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 黃鍾尺, 布帛尺 등 여러 가지 자(尺)가 用途에 따라 同時에 使用되었는데 이 때 校正되고 整備를 보게 되었다. 世宗 7年, 度量衡의 原器인 黃鍾尺이, 12년에는 周尺, 營造尺, 造禮器尺들이 13년에는 布帛尺이 校正 新制되었는데 이때 布帛尺의 길이는 五禮欄에 記錄된 것이 44.75cm이고, 田制詳定所 遵守冊에 記錄된 것은 46.73 cm로 두 種類가 되었다. .

睿宗때 完成된 經國大典 工典의 記錄은 布帛尺의 길이가 46.80cm로 되어 있는데 이 길이는 世宗 代 두 種類의 布帛尺 중 田制詳定所 遵守冊의 기록

과 一致한다.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은 王朝 別로 記錄되어 있어 年代 別로 흐름을 把握하여 하나의 體系를 세울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물론 朝鮮時代 前期에 쓰여진 다른 文獻들 즉, 增補文獻備考, 田制詳定所 遵冊, 經國大典 등에서도 布帛尺에 관한 記錄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文獻들에서는 布帛尺에 관한 것이 간헐적으로 記錄되어 있어, 朝鮮王朝實錄과 比較·分析하여 正確한 理論을 찾아내는데 받침이 되어 줄 수는 있지만 體系的인 흐름 세우기 어려웠다.

朝鮮王朝實錄에서 새롭게 發見된 注目할 만한 事實은 朝鮮時代 前期에 있어서 布帛尺이 衣服을 裁斷하거나 各種 布帛을 測量할 때 使用하는 尺(尺)로만 使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장인 白亭布帳과 白正布帳 製作時, 그리고 그 의장을 治裝하는 붉은 眞絲, 비단, 紅草襪을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朝鮮王朝實錄에서 布帛尺이 옷감을 재는데 使用했음을 보여주는 最初의 記錄이다(世宗 4年). 또 城壁을 쌓을 때 그 주위의 길이 測量時 布帛尺을 使用하였는데, 周尺이 있음에도 布帛尺으로 거리나 里程을 測量 했다는 事實은 疑問이 가는 部分이다(世宗 16年, 文宗 卽位年, 1年, 世祖 11年, 成宗 12, 16, 17, 20年). 王妃의 親蠶시 使用하는 갈고리의 나무자루 길이를 재는데 布帛尺을 使用하였다(成宗 8年). 옷감으로 된 章標, 旗, 麾를 만드는데도 布帛尺을 使用하고 있다(文宗 1年). 燕山君 代에는 布帛尺으로 사람의 身長을 재었음을 記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물론 布帛尺이 多様な 用途로 使用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記錄이 그 동안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朝鮮王朝實錄에서 보여지는 布帛尺의 用途는 이보다 훨씬 多様했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布帛尺에 관한 紀錄에서 처음으로 布帛尺을 校正한 것은 世宗 13年이고, 처음으로 造禮器尺과의 比較가 提示되어 있어 布帛尺 길이를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世宗 朝 卷 128 五禮에서다. 布帛尺에 基準하여 造禮器尺이 0.64 尺이 된다는 記錄은 당시의 다른 文獻들의 記錄과도 一致한다. 이를 가지고 世宗 代 布帛尺의 1

尺 길이를 計算해보면, 現在의 單位로 44.75cm가 된다. 이 때의 이 길이는 燕山君 代까지 變化가 없었다.

끝으로 朝鮮時代 前期에 있어서 다른 尺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布帛尺이 多様な 用途로 使用되었으며, 이처럼 多様な 用途로 使用되었던 布帛尺이 언제 어떻게 해서 옷감에만 주로 使用되는 尺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朝鮮 中·後期를 다룰 때 糾明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1984). 서울: 東亞出版社. p. 365.
- 2) 六典條例 戶典. 서울: 法制處. p. 74.
典錄通考 戶典. 서울: 法制處. p. 540.
大漢韓事典 (1972). 서울: 省音社. p. 385.
- 3) 尹張燮 (1975). 韓國의 營造尺度. 大韓建設學會誌, 19(63), p. 5.
- 4) 石宙善 (1979).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p. 110.
- 5) 朝鮮舊社會事情 (1929).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p. 200.
- 6) 衣生活研究 (1978). 大阪: 關西 衣生活研究會. p. 70.
- 7) 高橋正 (1922). 度量衡衍義. p. 48.
- 8) 柳子厚 (1940). 朝鮮貨幣考. 京城: 學藝社. pp. 480-481.
- 9) 萬機要覽. 軍政編. 서울: 民族文化推進會(編). p. 213.
- 10) 衣生活研究. 앞의 책, p. 71.
- 11) Paul Jacques. *Grillo: What is design, unit & measure.*
- 12) 史記. 卷二 夏本紀初.
- 13) 百子全書 孔子家語. 卷一 王言解編.
- 14) 尹張燮. 앞의 책, p. 3.
- 15) 李圭景 (1959). 五洲衍文長箋散稿. 卷49. 서울: 東國文化社. p. 180.
- 16) 漢書. 卷21 上. 律歷志.
- 17) 望月長與 (1958). 日本人の 尺度. 東京: 文藝書房. p. 73.
- 18) 朴興秀 (1978). 中國上古대 度量衡에 관하여. 大同文化研究 卷12輯, p. 132.
- 19) 吳承洛 (1937). 中國度量衡史. 上海: 商務印書館. p. 135.
- 20) 增補文獻備考 (1957). 서울: 東國文化社. 卷 91. 樂考 3-4張.
- 21) 世宗實錄. 世宗 13年 4月.

- 22) 朴興秀 (1967). 李朝尺度에 관한 研究. 大同文化研究, 第4輯, 서울: 成大史學研究會. p. 215.
- 23) 尹張燮. 앞의 책, p. 5.
- 24) 朴興秀 (1967). 周 秦 漢 時代의 中國 量制와 量尺에 관하여. 閔泰植博士 古稀記記念儒敎學論叢, p. 226.
- 25) 六典條例 (1973). 法制處 編. 卷3 度量衡條. p.74.
- 26) 李圭泰 (1973). 開化百景 III. 서울: 新太陽社. p. 390.
- 27) 增補文獻備考. 卷85 禮考 22張.
- 28) 經國大典 卷之六 工典 度量衡. p. 526.
- 29) 大典通編 (1963). 서울: 法制處.
- 30) 六典條例 (1973). 度量衡條, p. 74.
- 31) 朴興秀. 앞의 책. 1967a, p. 206.
- 32) 世宗實錄. 卷104 26張, 世宗 26年 6月.
- 33) 增補文獻備考. 卷90 樂考 2張.
- 34) 世宗實錄 卷49 38張, 世宗 12年 9月
- 35) 筆苑雜記 卷之二.
增補文獻備考 卷95 禮考 22張.
- 36) 世宗實錄 世宗 13年 4月 卷52 5張.
- 37) 世宗實錄 卷128 4張 '幣帛'
- 38) 朴興秀. 앞의 책, 1967a, p. 202.
- 39) 增補文獻備考 卷85 22張.
- 40) 李弘植 (1972). 國史大事典 II卷. 서울: 百萬社, p. 410.
- 41) 田制詳定遵守條書. 奎章閣圖書.
- 42) 增補文獻備考 卷91 樂考 3張 度量衡條.
萬機要覽. 財用編 p. 383.
柳馨遠 (1958). 礪溪隱錄 玄宗朝 卷2. 田制下 附 p. 50.
李肯翊 (1967). 練藜室記述 別冊 第13卷 政敎典故 서울: 景仁文化社.
- 43) 柳馨遠 (1969). 增補 礪溪隱錄 全. 서울: 景仁文化社, p. 499.
- 44) 經國大典. 卷之六 工典 度量衡條 p. 565.
國朝五禮儀. 序例 卷一 p. 412.
- 45) 李恩卿 (1981). 朝鮮王朝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梨花女大 碩士論文, p. 20.
- 46) 朴興秀 (1977). 新羅 및 高麗 時代의 量制度와 量尺에 관하여. 科學技術研究. 서울: 成大附設科學技術研究所, p. 6.
- 47) 張道斌 (1924). 朝鮮歷史要領. 京城: 高麗館藏版, p. 90.
- 48) 世宗實錄. 世宗 4年 9月, 13年4月, 16年2月, 卷128, 卷133 五禮.
- 49) 石宙善. 앞의 책, p. 110.
- 50) 李恩卿 (1993). 韓國과 中國의 布帛尺에 관한 研究. 서울女大 博士論文. p. 73.
- 51) 文宗實錄. 文宗 卽位年1月, 1年5月.
- 52) 世祖實錄. 世祖 11年11月.
- 53) 成宗實錄. 成宗 8年2月, 12年1月, 16年3月, 17年11月, 20年2月.
- 54) 燕山君實錄. 燕山君 11年12月.
- 55) 서울六百年史. 第2卷, p. 194.